

## 『2022 경남스포츠산업육성지원센터』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추가 모집 공고

경상남도가 지원하고 마산대학교가 운영하는 경남스포츠산업육성지원센터에서 스포츠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보육프로그램, 사업화 자금지원, 후속연계지원 등을 통하여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스포츠 산업 창업기업 추가 모집 계획을 공고하오니 경남도 내 (예비)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7월 21일  
스포츠산업육성사업단장

### I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스포츠 창업기업의 상품, 서비스, 브랜드 향상을 통한 매출 극대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우수 (예비)창업기업 육성 맞춤형 교육 및 보육지원
- 기업가정신을 갖춘 창업자 양성
-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스포츠산업 비즈니스 발굴
- 지속 가능한 스포츠산업 창업 생태계 조성

#### □ 사업 기간 : 2022년 8월 ~ 2022년 11월

#### □ 지원내용

- 사업 아이템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자금, 시설, 컨설팅 등)
- 창업보육 기업별 맞춤형 창업보육과 창업보육실 무상 제공

(최대 1,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 제공

※ 단, 창업보육 단계까지 최종선발된 팀에게만 지원함. 지원금의 10% 자부담 매칭 필수)

## □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 '19. 07. 21. ~ '22. 07. 20.에 창업한 기업(개인/법인)
- 공고일 이전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자(사업기간 내 주소지 변경 불가)
- (예비창업자)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 예비창업자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을 계획 및 준비중인 자
- 초기창업자 스포츠산업 분야 사업을 계획 및 진행중인 창업 3년 미만의 기업
- 총사업비에서 정한 자부담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이행할 수 있는 자

\*예비창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야 함.(공고일: 2022년 7월 21일)

\*초기창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으로 함.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선정 후, 창업교육 및 워크숍 필수 참여

## □ 사업일정 및 내용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II 신청 · 접수

□ 접수기간 : 2022년 7월 21일(목) ~ 8월 3일(수)

### □ 제출서류

순번	필수로 제출해야 할 서류	비고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활용 및 이용 동의서(팀원포함) 각 1부	
3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팀원포함) 각 1부	
4	가점서류 각 1부(대표자의 서류만 제출)	
5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 1부(대표자만 제출)	

□ 접수방법 : 신청서류 e-mail 제출 또는 우편접수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마대로 2640, 경남스포츠창업지원센터 1층 행정지원실
- 이메일 : jjae0811@masan.ac.kr
- 문의 : 055-230-0168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III 평가방법

### □ 평가일정

- 보육기업 사업계획서 서류평가 : 2022.08.04.~05. \*1.5배수 선발
- 보육기업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 서류평가 통과 후 별도 안내
- ※ 1.5배수 이하 접수 시 서류평가 생략
- ※ 선정된 창업자의 협약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순서대로 선정

□ 평가위원 : 내·외부 총 4명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합계
사업역량	- 사업참여 의지, 태도(10점)	20	100
	- 관련분야 경험 및 경력(10점)		
사업계획	- 차별성(15점)	60	
	- 시장진입 가능성(15점)		
	- 구현 가능성(10점)		
	- 사업계획의 충실성(20점)		
기대효과	- 성장가능성(10점)	20	
	- 스포츠산업 파급효과(10점)		
가점사항	- 사업 관련분야 지식재산권 보유중인 자(2점) *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제출 (말소된 권리는 해당되지 않음)	최대 6점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주최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2점) * 발급번호, 기관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증빙자료 사본 제출		
	- 장애인(2점) * 장애인 등록증 사본 제출		
	- 은퇴선수(2점) * 선수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선수등록확인서 등)		

## IV

## 유의사항

- 참여제한 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참가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창업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창업지원 사업 중복참여 여부 -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 일 경우 신청 가능함. 단, 타 기관에서 중복 참여에 제한이 있는 경우 사업비 지급 및 사업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최종결과보고 - 본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 일체에 대한 증빙 등 제출 필수
- 자료제출 의무 - 선정된 창업자 및 기업은 수행 과정 중 성과 및 기업 성장추이 파악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정기·비정기)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2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 \*사업성과, 매출, 지식재산권 확보, 투자유치 등 정량 및 정성적인 자료 포함.
- 기타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지침·기준 및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있음
- 사업계획 평가 발표는 신청자(대표)가 진행해야함
- 사업진행에 있어 간담회 및 회의는 신청자(대표) 필수 참여하여야 함